

2017년 교회재정세미나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 3시

장소 // 소망교회 선교관 2층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an.or.kr](http://www.cfan.or.kr)

## ■ 행 사 순 서

사회Ⅱ 조기성 국장(기독경영연구원)

- 15:00-15:10     **환영 인사**

임성빈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

- 15:10-17:00     **주제 강의**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최호윤 회계사(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

- 17:00-17:30     **프로그램 소개**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17:30-18:00     **질의 응답**

## ■ 주 제 강 의

---

---

#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

최호윤 회계사(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

### 목회자와 세금

교회는 목적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기부 받은 현금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상속세 포함) 비과세 혜택과 기부한 성도들에게는 기부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익법인 등'으로 분류되므로 교회가 대가 없이 수령하는 현금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대상<sup>1)</sup>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영리법인은 면세단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두고 하는 표현이며, 이는 현금의 귀속주체인 교회의 과세관계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교회가 수령한 현금과는 별개로 소속 교인들로부터 기부 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신수비 등 다른 유사한 명칭 포함)는 귀속주체가 목회자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구분 되어야 한다. 교회가 신도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수령하는 사례비 등은 공익법인 등인 종교기관으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수령하는 것이므로 목회자가 수행하는 사역(노무 활동)의 성격, 계속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만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교회는 비영리'법인'이고 목회자는 일반 '개인'으로 조세체계상 귀속체계가 구분되며, 적용세법도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전혀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

### 종교인과세 연혁

#### 가. 초기 흐름

- 1968/7/2: 국세청장 과세방침 천명과 반발
- 1992.1~7: 기독교 내부의 자정적 논의(월간목회: 손봉호 vs 한명수)
- 1992/9/18: 국세청, 성직자 과세문제는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
- 1994/3/11: 천주교 소득세 납부 결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조 및 48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나. 사회 문제화

- 2006/2/2: 종비련이 길거리 서명운동으로 사회 쟁점화
- 2006/5/4: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 혐의로 고발  
    <=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대한 사회의 반감적 공감대 형성되기 시작함
- 2006년 8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 돼 있지 않음과 관행 등에 비추어 국세 청장의 고의적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리

#### 다. 최근 흐름

- 2012/3/19: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종교인 과세언급
- 2012/6/20, 10/26: 기획재정부와 종교인 간담회
- 2013/1: 기재부 기타소득 과세방향을 언론에 흘리다가 유보로 급선회
- 2013/8/9: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① 원천징수 예외 등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통과안됨
    - ✓ 원천징수 반기납부
    -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 교회 원천징수 불이행시 종교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 ② 필요경비 80%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3/11/5 공포
    - ✓ 기타소득 사례금에 종교인 사례금을 명시(41조 10항)
    - ✓ b사례금의 필요경비 80%(87조)
- 2013/12: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룸
- 201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4월로 미룸
- 2014/4: 정부 종교인소득세 조항 신설 검토
- 2014/12/25: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시기 1년 유보
- 2015/8 :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종교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설)
- 2015/12/2: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년 1월 1일 시행

### 개정 소득세법의 특징

개정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교인소득 관련 내용중 특이한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세법에선 소득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21조 3항)

#### 2)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소득세법 155조의6)

### 3)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인원 계산시 종교관련 종사자 인원수를 제외하므로 목회자 중심으로 본다면 목회자 소득은 반기납부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86조 2항)

### 4) 독립적 입장인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가 수령하는 부대경비 등은 원천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중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일직비, 여비, 차량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등)
- 자녀 출산/보육 수당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5)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독립적지위에 있는 소득자에겐 현실적으로 퇴직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 6) 간주필요경비 계산시 추정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건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 지급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한후 다시 월별로 배분한다.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 7) 종교인소득 조사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소득세법 170조)

세무조사시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종교인소득 조사시 교회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특이사항으로부터 공통 사항을 추론해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의 과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면서 부담세액 비율을 낮춘, 종교인들을 배려한 특혜적 개정 규정들이다.

## **소득분류**

누군가 제3자로부터 특정한 원인행위 없이 수령하는 경우 민법상 증여라고 하며, 증여를 받으면 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한다. 특정한 행동을 원인으로 반대급부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부담한다. 즉, 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면 원인행위 유무에 따라 증여세 또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고, 사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지역교회에 소속된 목회자가 목회사역을 수행하고 지역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사례비는 특정교회 사역을 원인으로 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은 특정인이 수령하는 소득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일의 '계속반복성 여부'와 '특정 조직에의 소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특정 조직 소속	독립적 입장
계속반복적	(정규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근로소득(소득세법 20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근로(노동, 일)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 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특정 조직의 대표(예: 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을 하고 수령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은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예: 회사에서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나. 기타소득(소법 21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 (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세법의 소득분류 체계상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먼저 해당한다.

##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처음 과세하기 시작하는가?

2018년 개정소득세법 시행관련 언론 기사들이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럼 2017년까지는 종교인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2018년부터 처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것인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사역하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정기성'과 '소속성'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납세하기에 거부감이 있는 종교인들을 위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혼재하는 소득분류 규정으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소득세법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목회자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세법은 그 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에게 배려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법 규정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여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종교인들을 배려한 세법개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일반사회에 소금과 빛으로 선한행실을 보여주지 못하였기에 일반 사회가 목회자들을 배려할 만큼, 그리고 그 것을 '법'이라는 규정으로 정하기까지 오게 만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할 때다.

### 신고·납부 의무

#### 가. 원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세액을 반기<sup>2)</sup>별로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128조)

#### 나. 예외: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교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은 목회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원천징수제도

일반적인 경우 소득 귀속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거나 과세당국이 소득자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2)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월 신고

수령하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지급시점에 공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이를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로 다르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절차와 원천징수후 세금을 다시 재계산해서 확정할 것을 전제로 지급시 추정 세액액을 원천징수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절차 두가지형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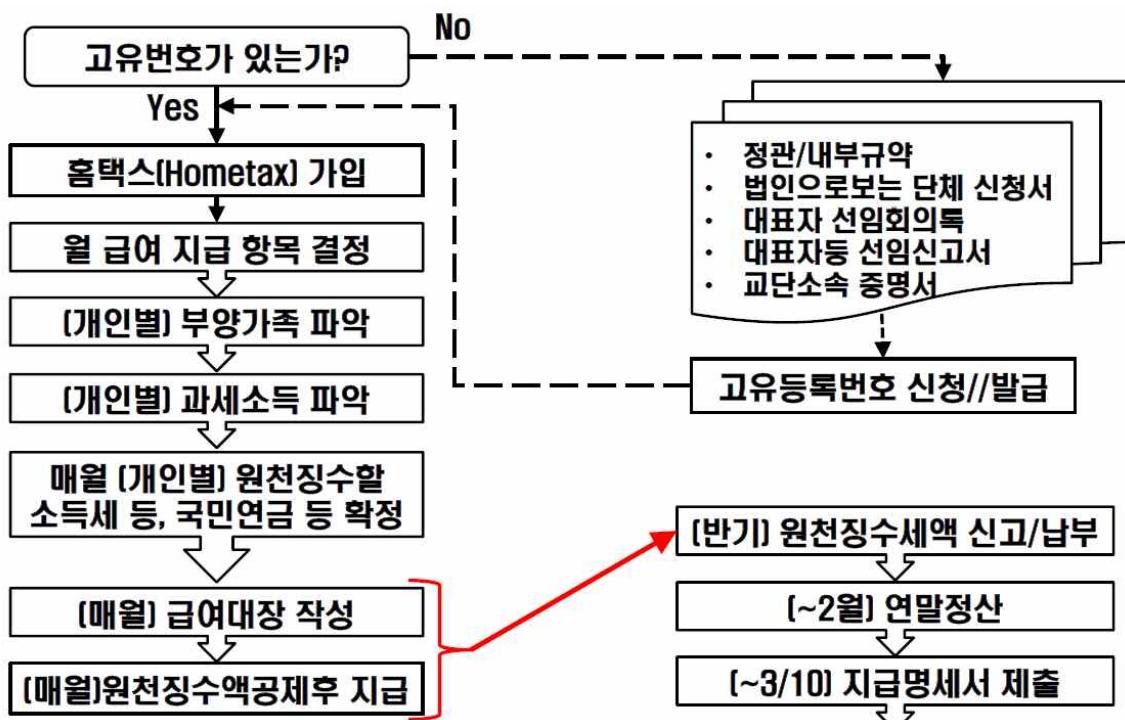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절차는 예납적 원천징수 절차에 해당하며, 다음해 2월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경우

- ✓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 ✓ 매월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 ✓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 ✓ 다음해 3월 10일까지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한다.

#### A. 근로소득으로 신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매월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본인 부담 사회보험료도 공제)한다.

### ① 과세대상 소득 파악

지급액중 다음의 비과세소득 항목을 제외하곤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다.

-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 출산 또는 보육보조금(6세<sup>3)</sup>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
- ✓ 여비교통비중 실비변상액
-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본인 명의 차량을 교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 ✓ 법으로 정한 교회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 고등교육법<sup>4)</sup>에 따른 학교 입학금·수업료·수강료 중 일정요건<sup>5)</sup>을 갖춘 학자금

목회자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지출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실비정산)**하는 경우 교회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교회로부터 수령해서 지출하거나 본인이 먼저 선지급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교회의 비용으로 보나, 실비정산 절차 없이 정액(定額)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의 개인 소득으로 본다.

### ② 부양가족수 파악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 배우자
- ✓ 20세이하 자녀(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 60세이상 직계존속(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장애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수 계산시 본인 및 소득 없는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하며, 20세 이하 자녀 경우 20세 이하 자녀수의 2배수를 부양가족수로 한다.

### ③ 공제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소득과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간이세액 조견표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세액계산 화면([www.nts.go.kr/cal/cal\\_06.asp](http://www.nts.go.kr/cal/cal_06.asp))에서 과세대상금액과 부양가족수가 만나는 지점의 소득세 금액을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으로 하며, 소득세의 10%상당액(원단위 절사)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사례)

식대10만원과 육아수당 10만원을 포함한 220만원을 지급하며, 학교교사인 배우자와 아들(9세), 딸(3세)로 구성

3)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해당여부를 판단 한다.

4)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5) 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과정이고, 교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며,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것

- 부양가족수: 본인[1] + 배우자(학교교사)[0] + 9세아들[1+1] + 3세딸[1+1] => 5
- 과세소득: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 200만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및학자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1,930	1,940	17,800	13,300	5,210	1,830	0	0	0
1,940	1,950	18,010	13,510	5,410	2,030	0	0	0
1,950	1,960	18,210	13,710	5,600	2,230	0	0	0
1,960	1,970	18,420	13,920	5,800	2,430	0	0	0
1,970	1,980	18,630	14,130	6,000	2,630	0	0	0
1,980	1,990	18,880	14,330	6,200	2,820	0	0	0
1,990	2,000	19,200	14,540	6,400	3,020	0	0	0
2,000	2,010	19,520	14,750	6,600	3,220	0	0	0
2,010	2,020	19,850	14,950	6,800	3,420	0	0	0
2,020	2,030	20,170	15,160	6,990	3,620	0	0	0

#### 나. 급여명세 작성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지급액과 원천징수공제액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한 개인별 내역표를 '급여명세'라고 한다. 급여명세라는 표현 대신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례비명세, 신수비명세, 생활비명세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액과 공제내역이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교부하며, 서면방식이 아닌 이메일로도 제공할 수 있다.

#### 2017년 \*\*월 급여명세서

이름: 0 00			
지급내역	금액	공제내역	금액
기본급	3,000,000	소득세	7,000
식대보조	100,000	지방소득세	700
육아/출산수당	100,000	국민연금	135,000
자기운전보조	135,150	건강보험	91,800
학자금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6,010 0
		공제액 계	240,510
지급액 계	3,335,150	차인지급액	3,094,640

\*\*\* 교회

#### 다. 급여대장 작성

지역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개인별 지급액과 공제할 세액 등을 표로 정리한 것을 급여 대장<sup>6)</sup>이라고 하며, 매월 작성한 급여대장의 6개월간 합계 금액은 반기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초내용이 된다.

2017년 MM월 급여 대장

지급일: 2017/mm/dd

이름	지급액					공제액							순지급액
	기본급	식대보조	육아/출산 수당	자기운전 보조	합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장기요양 보험	고용보험	합계	
0 00	3,000,000	100,000	100,000	135.150	3,335.150	7,000	700	135,000	91,800	6,010	0	240,510	3,094,640
# ##	2,000,000	100,000	100,000	42,500	2,242,500	0	0	90,000	61,200	4,000	13,000	168,200	2,074,300
△ ▲▲													
합계	5,000,000	200,000	200,000	177,650	5,577,650	7,000	700	225,000	153,000	10,010	13,000	408,710	5,168,940
과세소득합계 5,000,000	신고 제외 비과세소득합계 577,650				납부액 원천징수세액			4.5%	3.06%			0.65%	

### 라. 원천징수액 공제후 사례비 지급

매월 지급일에 개인별로 계산한 원천징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마.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직원 20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하며, 20인 초과인 경우 매월 징수)

### ① 시고

a. 소득세

반기가 종료하는 다음달 10일<sup>7)</sup>까지 6개월간 세목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 제출방식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
  -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 국세청 흠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 b.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 ✓ 지방소득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단위로 관할하는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또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이택스([etax.seoul.go.kr](http://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

6) 명칭은 급여대장, 사례비대장 등 교회의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7)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해 1월 10일

② Home Tax 신고 방법

- i)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접속해서  
 ii) 반기 종료월 기준 원천징수 대상인원, 6개월간 총지급액(일부 비과세 제외)과 원천징수세액을 기록하고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근로소득

※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간이세액	A01	2	30,000,000	42,000 (6개월간 합계)				
중도회사	A02	(마지막 월)	(6개월간 합계)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	30,000,000	42,000				

< >

➤ 총 합계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9)당월조정 환급세액
		(4)인원수	(5)총지급금액	(6)소득세 등	(7)농어촌 특별세	(8)가산세		
총합계	A99	2	30,000,000	42,000				

< >

- iii)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 신고완료

③ (지방소득세) 이택스/위택스 신고방법

- i)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클릭

- ii) 납세의무자 기본정보 기입

④ 신고인정보

• 주민번호	<input type="text"/>	• 성명	<input type="text"/>
• 전화번호	0106 <input type="text"/>	• 비밀번호	***** (영문/숫자 5~9자리)

⑤ 납부자 인적사항

• 개인/법인구분	종교단체(12)			
• 단체번호	2138 <input type="text"/>	• 단체명	<input type="text"/> 교회	
• 사업자번호	<input type="text"/>	-없이 입력	• 상호/대표자	<input type="text"/>
전화번호	0256 <input type="text"/>	-없이 입력	휴대폰번호	0106 <input type="text"/>
• 사업장주소	우편번호검색 <input type="text"/>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input type="text"/>	이태원동	
• 신고납부관할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제1동(이태원동)	

⑥ 납부구분

• 납부구분	<input type="radio"/> 1. 월	<input checked="" type="radio"/> 2. 반기	
• 소득지급일	2017 <input type="text"/> 년 1~6 <input type="text"/> 월	• 귀속년월	2017 <input type="text"/> 년 01 <input type="text"/> 월
• 신고일자	2017-07-04 <input type="text"/>	• 당초납기	2017-07-10 <input type="text"/>
• 납부기한	2017-07-10 <input type="text"/>	도움말열기	

- iii) 신고내역과세표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록

(교회 공인인증서 없어도 신고 가능)

특별징수

불러오기

새로작성하기

납부액 및 가감조정

납부액 및 가감조정

납부액

기본사항

특별징수 명세서

2.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납부세액

소득세액

지방소득세액

도움말열기

항목	인원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	도움말열기
01자소득	0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0	0	0	
<b>근로소득</b>	<b>3</b>	<b>42,000</b>	<b>4,200</b>	
연금소득	0	0	0	
<b>기타소득</b>	<b>3</b>	<b>80,000</b>	<b>8,000</b>	
퇴직소득	0	0	0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0	0	0	
비거주자 양도소득	0	0	0	
법인원천(내국법인)	0	0	0	
법인원천(외국법인)	0	0	0	

③ 가감세액(조정액) 내역입력 [열기]

과세표준 합계

122,000

특별징수세액 합계

12,200

가산세

0

차감세 합계  
(원금부록액)

0

금액 납부할 세액

12,200

비고

※ 원단위 절사를 인하하여 발생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만 항목별 지방소득세액을 수정하고 그 내용을 한글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입력하십시오.

iv) 우측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

#### ④ 납부

신고기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방식중 한가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 [소득세]

- ✓ 납부서를 작성(또는 전자신고후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 작성한 납부서 내용을 기초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종료 후 계좌인출 방식으로 전자 납부

##### [지방소득세]

-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 [홈택스를 활용한 소득세 (직접) 납부 방법]

- i)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국세납부> (전자신고한) 납부할 세액 금액 조회해서 납부할 세목을 선택한 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납부할 세액 3,612,730

납부할 건수 : 1 건

관서명(관서코드)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용산(106)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2015	2015-10-26	3,612,730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3,612,730</span>	김현(0...	0126-1510-3-41-83046511

이용안내

- 인터넷 세금신고 자료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후에는 신고한 납부정보는 신고당일에만 서비스)
-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웹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결과확인과 납부확인서 출력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      가장개좌번호 SMS 전송

- ii) 금융계좌 연결해서 바로 납부(금융계좌 공인인증서 필요)

빠르고 간편한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으로 - Internet Explorer

고지내역을 확인하시고 납부계좌 및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즉시납부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 납부가능시간 안내

관련법규에 따라 납부하신 후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2015	세목코드	1510341
징수기관명	용산(106)	납세자번호	1208760***
납세자성명	주식회사 엔지오웨어	납부자번호	1208760***
납부금액(원)		본세(원)	
농특세(원)	0	교육세(원)	0

실납부자 성명	주식회사 엔지오웨어	실납부자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1208760***
---------	------------	-------------------	------------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명	국민
납부시간 : 365일 07:00 ~ 22:00	
통신상태	정상
납부계좌번호	4318C
계좌비밀번호	*****

납부하기      취소

iii) 또는 흠택스에서 납부서 출력

(흡택스에서 출력한 납부서에는 송금할 가상계좌번호도 부여됨.)

영수증서(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1면)
분류기호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 코드	계좌번호	
0126	17 09	4	14	6016 [redacted]	중부 세무서	201	011989	
상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446-[redacted]	회계년도	2017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redacted] 15, 2층 (을지로62길) (을지로62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년도/기분	2017년 08월				원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7년 09월 11일			
세목명	납부금액							
근로소득세(감)	17,180							
교육/방위세	0							
농어촌특별세	0							
가산금	0							
계	17,180							
[redacted] 23: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2017.09.11 (예약이체불 KEB하나 191-3567-[redacted] 73-7 신한 562-1056-[redacted] 03-0 국민 001-4926 02-6 우리 913-5665-[redacted] 03-5 기업 035-5756-[redacted] 84-0]								
[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redacted]수납인			
[redacted] 은행					[redacted] 지점			

**[위택스 신고후 지방소득세 납부]**

i) 전자 신고후 납부 방식을 선택(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 접수내용

신고자	최호윤	접수일자	2017-11-02
전자납부번호	11530-[redacted] 04543-2		
접수결과	정상		
신고세목	특별징수	귀속년도	2017
주민/법인번호	05-*****		
성명/법인명	목회 [redacted]	신고세액	9,570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redacted] 납부서 출력** **[redacted] 인터넷납부** **[redacted] 신고결과서출력** **[redacted] 명세서조회** **[redacted] 신고취소** **[redacted] 확인**

ii) 인터넷납부로 계좌에서 바로 인출납부하거나

iii) 납부서를 출력한 후 납부서상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서울 서초구		(납세자용)		
납세번호	기관코드	세목	납세년월기	과세번호
	02	10140004	2017103	6
납 세 자 사		납세자번호	24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4층	
과세대상 2017년 09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 목	본 세	가 산 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8,700	0	87,000	
가감조정금액	0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	
합 계	8,700	납부기한: 2017.10.13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전자납부번호
				11650 1 1997522 7
서초구청장	수납인	인터넷뱅킹 국세/공과금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기재		

(예시: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 기재 방식)

선택	구분	입력값	설명
<input type="radio"/>	선택 / 전체납부	12087-*****	납부의무자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관련세금을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input type="radio"/>	타인내역납부		간편납부번호로 '타인'에게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간편납부번호는 위택스( <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 ) 또는 지자체(방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단건납부	전자납부번호 입력	단건납부를 원하실 경우 납부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바. 연말정산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정산차액을 추가 징수(또는 환급)한다.

#### 사.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교회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개인별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등록되고,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B. 기타소득으로 신고

### 가. 매월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① 과세대상 소득 파악

수령액중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 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며, 수령액중 다음 항목은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 ✓ 실비변상<sup>8)</sup> 설질의 지급액(여비,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 자가운전보조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 및 물품비)
- ✓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 출산 또는 보육보조금(6세<sup>9)</sup>이하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
- ✓ 교회가 소유한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교회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 고등교육법<sup>10)</sup>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 ② 필요경비<sup>11)</sup> 금액 계산

매월 받는 금액을 연단위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각 수입금액 규모별로 차등화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③ 원천징수소득세액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의 20%를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액으로 공제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공제한다.

$$\text{원천징수세액} = (\text{지급액} - \text{비과세소득} - \text{필요경비}) * 20\%$$

8)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9)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해당여부를 판단 한다.

10)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11) 소득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 발생.

(사례) 10월분 사례비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연단위 수입금액 환산: 200만원 \*12월 = 2,400만원
- 연단위 수입금액 기준 필요경비 계산: 1,600만원+(2,400만원-2,000만원)\*50%=1,800만원
- 연단위 기준 기타소득금액: 2,4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연단위 환산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액: 600만원 \* 20% = 120만원
- 당월분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액: 120만원 / 12월= 10만원
- 당월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0만원 \* 10% = 1만원
- 원천징수세액 공제후 당월분 지급액: 200만원 - 10만원- 1만원 = 189만원

④ 원천징수액 공제후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행/교부

개인별 사례비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액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교부한다.

#### 나.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목회자를 제외한 일반직원 20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

① 신고

a. 소득세

반기가 종료하는 다음달 10일<sup>(12)</sup>까지 6개월간 세목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한다. 제출방식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
- ✓ 작성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b.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 ✓ 지방소득세는 행정자치부가 전국단위로 관할하는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또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이택스([etax.seoul.go.kr](http://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

② 납부

신고기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방식중 한가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 ✓ 납부서를 작성(또는 전자신고후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 작성한 납부서 내용을 기초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종료 후 계좌인출 방식으로 전자 납부

**[지방소득세]**

-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12) 1월~6월분: 7월 10일, 7월~12월분: 다음해 1월 10일

#### **다.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며 매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정산차액을 추가징수(또는 환급)한다.(소득세법 145조의3)

#### **라.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교회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소득세법 164조)

### C.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비교

40세 목회자를 기준으로 월 사례비 규모별 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 배우자(소득 없음), 중학생 자녀 1인, 초등학생 자녀 1인
- 사회보험:
  - ✓ 근로소득은 직장 가입자/ 기타소득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
  - ✓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개정(예정)요율 기준
- 수입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기부한다고 가정

과세소득/월	2,786,560		3,650,790		4,500,000	
	근로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간소득(A)	33,438,720	33,438,720	43,809,480	43,809,480	54,000,000	54,000,000
필요경비	(10,265,808)	(22,719,360)	(11,821,422)	(27,142,844)	(12,450,000)	(30,200,000)
소득금액(B)	23,172,912	10,719,360	31,988,058	16,666,636	41,550,000	23,800,000
소득금액비율(=B/A)	69%	32%	73%	38%	77%	44%
인적공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연금보험공제	(1,504,742)	(964,742)	(1,971,426)	(1,499,997)	(2,424,600)	(2,142,000)
건강보험료공제	(1,110,165)		(1,454,474)		(1,792,800)	
과세표준	14,558,005	3,754,618	22,562,158	9,166,639	31,332,600	15,658,000
산출세액	1,103,700	225,277	2,304,323	549,998	3,619,890	1,268,700
근로소득세액공제	(456,110)		(660,000)		(660,000)	
자녀세액공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기부금세액공제	(347,593)	(160,790)	(479,820)	(249,999)	(623,250)	(357,000)
특별세액기본공제	0	0	0	0	0	0
부담세액/년	0	0	864,503	0	2,036,640	611,700
부담세액/월	0	0	72,042	0	169,720	50,975

####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2018년부터는 수령하는 사례비의 성격을 교회 또는 목회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교회 차원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

-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
-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의 판단기준은 경제적 관점이다. 종교인소득의 분류기준에 우리가 경제적 관점만 고려할 것인가?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단순히 세금이 적거나 세금을 납부함으로 받게 되는 혜택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동기는 돈을 중심으로 한 이기적 관점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판단기준이 경제적 유불리 차원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방법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세법학에서는 세금을 '국가 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는 금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세의 본질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가와 국민 간의 계약에 의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보는 국가계약설(國家契約說), 조세는 일차적으로 개인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국가의 생산적 지출을 통한 개인의 이차적인 생산력을 증대시켜 준다는 국가생산설(國家生產說),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한 국가착취설(國家搾取說), 사회변동 속에서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국가진화설(國家進化說) 등과 같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국가운영비용을 분담한다는 속성에선 차이가 없다.

우리가 사회현상학적 관점으로만 세금을 볼 것인가?

성경의 역사 흐름속에 나타난 현금과 세금의 성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율법이전

아벨과 개인의 제사시 드린 제물,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의 십일조 개념이 등장하나 율법 이전의 헌물과 십일조개념으로 세금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 2) 율법시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사이의 화목', '백성들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공통적 속성을 가지며,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현금/재정의 사용처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의 화목',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 '공동체 운영경비 부담(레위지파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금/교회재정과 세금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 3) 왕정시대

구약의 헌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현금으로 변천되었으며,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비로소 종교활동으로서의 제사 및 레위지파를 위한 '제물'과 공동체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을 구분하였다.

#### 4) 신약시대

성전이 회당으로, 물리적인 회당이 공동체적인 교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약에서의 제물을 넘어선 연보의 개념이 초대교회의 통용, 그리고 풍요함으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는 마계도냐교회와 고린도교회 사이의 연보(捐補, generosity, liberal gift)는 하나님사랑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타났다.

왕정시대를 지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시대는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드린 연보(현금)과 일반국가 백성으로서 납부한 세금의 사용처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교회공동체와 성도 개인에게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연보(현금)와 세금

의 속성으로 신정일치시대에는 현금의 정신을,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시대 이후의 현금사용에 대해 찾을 수 있다. '제물, 제물/연보, 제물/연보/세금'의 단계로 확장된 변천과정에서 표면적으론 교회 또는 국가에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론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의 사용처 속성을 검토하는 것은 교회 재정과 세금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국가의 구성원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세금의 성격이 공적비용의 분담이라는 1차적 성격에 국한되며 발전해왔음에 비해 연보(현금)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 운영비용 차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부조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교회에 드려진 재정(연보, 현금)은 세금의 성격을 포괄한다고 하겠다.

세금이 국가공동체 운영비용을 구성원들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금은 국민들간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인 적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를 생각해야 한다. 즉, 세금은 기분 나쁘게 국가로부터 약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연보(捐補)라는 성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가 분담해야할 경비인 세금을 내가 분담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면 이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구제와 선교는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세금은 공동체 운영비용으로 규범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동체 운영경비를 구성원 누군가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즉,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군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라 하겠다. 즉, 세금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질문들이 제기 된다. 우리는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가지는 유불리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잠재의식은 어느 방식이 돈을 적게 내느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어느 것이 교회에, 목회자 개인에게 부담이 적은 것인가?'라는 판단기준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을 제쳐둔다면...

교회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기준들은 교인들에게 그대로 학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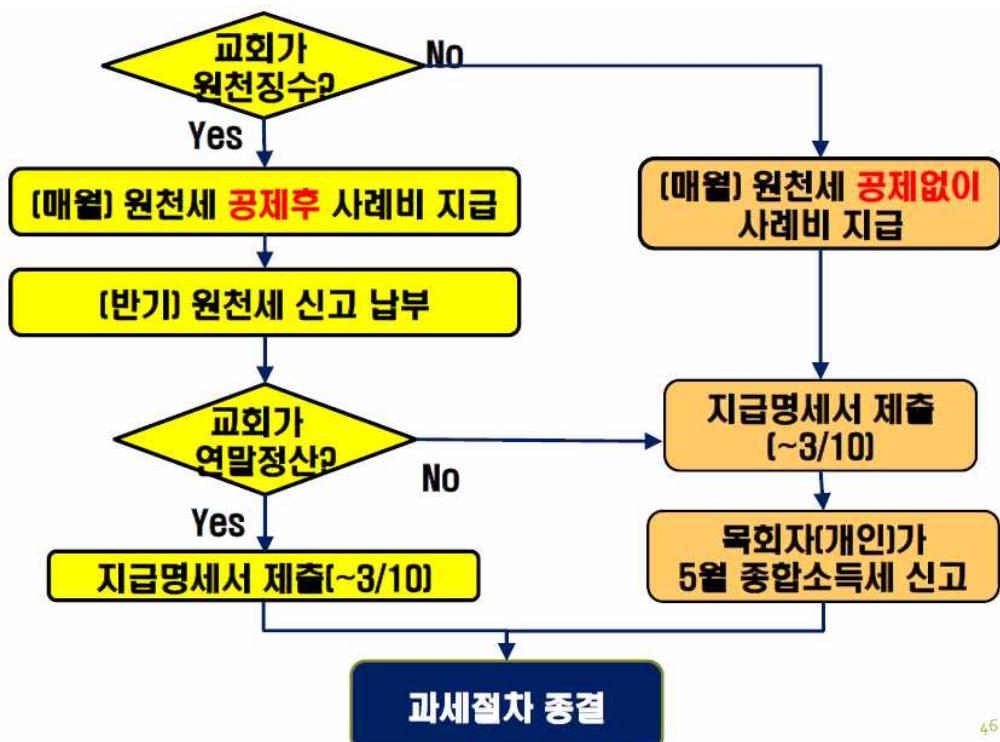
교회가 경제적 관점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인들도 삶속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하게 된다. 세금이 가지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제적 논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맘몬중 맘몬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

- 1) 교회는 매월 지급시 공제금액 없이 지급하고
- 2) 교회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 3) 목회자 본인이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6

##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혜택

### 가. 근로장려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단독(미혼) 또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sup>13)</sup>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13) 단독가구: 1,300만원, 홀별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나.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소득세 신고와 사회보험

#### 가.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

#### 나.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지역교회에 소속된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대상자가 된다.

### 교회가 알고 준비해야할 사항

#### 가. 소득 분류기준 결정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만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기준이 무엇에 근거하는 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목회자가 고민하고, 교회가 고민하면서 결정하면 이러한 과정은 또한 교인들이 앞으로 각자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활동에서의 판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는 사례가 되고 계기가 된다.

#### 나.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 추가 편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교회 부담분이 발생한다. 그동안 목회자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과는 다른 체계의 사회보험보험이 교회가 부담하게 되므로 관련 비용(과세소득의 7.82%)을 2018년 예산편성시 인건비 항목으로 추가 고려해야 한다.

(참고: 월급여 190만원 이하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으로 국민연금의 90%까지 감면)

#### 다. 사례비항목 결정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항목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사례비 지급시 이를 명확히 항목을 구분표시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 라. 경비 지급절차 개선

그 동안 목회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월정액(月定額)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직접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 하더라도 모두 목회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명의 금융 계좌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발생한 경비를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마. 관련 세무절차 공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행정 사무원 또는 목회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홈택스에 가입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여러 지역교회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거나 노회단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 소득세 신고 관련 향후 일정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 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경우

2018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① 올해부터 바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매월 사례비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2018년 2월 사례비 지급시: 201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 2018년 3월 10일: 2017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② 2018년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18년 1월 ~ : 매월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 2018년 7월 1일 ~ 10일: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일 ~ 10일: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중: 사례비 지급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3월 1일~10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18년 5월 1일 ~ 31일: 목회자 스스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 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경우

2018년 지급하는 소득부터 개정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2017년분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

- 2018년 1월 ~ : 매월 사례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 2018년 7월 1일 ~ 10일: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일 ~ 10일: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중: 사례비 지급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3월 1일~10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2019년 5월 1일 ~ 31일: 목회자 스스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 나가는 글

세금이 일반 사회 국민들의 정서감정에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의 존재기반이 되며,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 운영비를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복음사역 이전에 구성원으로서의 분담(分擔)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비용분담 성격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되며,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소극적인 실천행위'이다.

교회는 세상이 하라고 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분담금으로서의 세금을 외면한다면....

당연하다고 요구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선택된 가장 적은 방식으로만 분담하며, 세상이 요구하지도 않는 하나님나라의 분담금으로서 선교비와 구제비를 지출하며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쇼'라고 비하하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금은 논리적 산출물이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을 토대로 과세할 수도 있고 면세할 수도 있다.

세법이 목회자의 소득에 대하여 세법 논리를 흐트리면서 종교인소득세라는 기타소득규정을 신설해서라도 과세하겠다고 세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의 선한 사업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세법 규정은 사회가 우리에게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시금석(試金石)을 던졌다. 개정세법으로 시행되는 종교인소득세제도는 교회가 교회의 판단기준이 경제적 기준으로만 움직이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공동체인지 여부가 곧 드러나게 된다.

창조주의 아들임에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낚주시며 소외되었던 이방인, 죄인들을 찾아오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가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차원에서 종교인소득세를 대응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 Q & A

Q) 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교회 재정을 조사할 것 아닌가?

A) 목회자의 소득세 탈루여부는 교회 재정을 조사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 재산규모가 이상 증가했지만 관련 세금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 순서다.

국가가 종교인 소득세를 이유로 교회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제외되는 혜택과 교회에 기부한 교인들은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고, 이런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현금(출연재산)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잘 사용하였는지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인 소득세 때문에 교회재정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소득세 과세와는 무관하게 이미 국가는 교회재정을 들여다 보겠다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교회재정을 조사하는 것을 왜 두려워 해야 하는가? 국가가 교회 재정을 조사 해보니 문제없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조직이란 얘기를 듣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이라. 고후 8:20~21)

Q)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

A)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일/노동을 한 결과 수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Q) 다른 소득이 있는 이중직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그 다음해 5월 사례비 소득과 이중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Q) 지역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분류는 동일해야 하는가?

A) 소득세는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므로 같은 교회 소속 목회자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Q) 구제비,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는?

A) 선교비 등의 현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수령한 금액은 종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개인계좌로 수령한 금전을 바로 교회 계좌로 입금시켜서 교회명의로 집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Q) 목회자가 수령한 사례비의 대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교회에 지출하는 경우 실질적은 생활비는 얼마 안된다. 세금계산 기준금액을 현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A) 목회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목회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교회로 헌금하는 경우는 송금(또는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교비 등의 헌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나중에 헌금을 얼마를 했더라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다.(교회 결산서상 사례비는 실제 지급한 총액으로 표시하고, 헌금 수입액도 헌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목회자가 교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처음부터 책정된 금액의 일부(또는 전부)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는 감액 지급한 금액을 목회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결산서는 감액된 금액을 사례비로, 헌금액은 없는 것으로 표시한다)

- Q) 담임목회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 유류대 등의 지출액이 월 20만원초과하면 과세대상소득인가?
- A) 차량등록시 교회명의가 부기(附記)되어 있으면 명의가 담임목회자 개인 명의이더라도 교회 차량으로 보아 관련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Q) 목회자 사택 월동 김장비는 과세소득항목인가?
- A)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김장이 사택에서 교인들의 회의 또는 주일 공동식사에 사용되는 용도라면 교회 비용으로 보아 과세소득이 아니다. 준비하는 김장이 담임목회자 가정 개인용도로 사용될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 Q) 지급항목을 변경함으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A)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외에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명목상 변경하는 항목 명칭변경은 무의미하다.
- Q) 은퇴 원로목회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 A)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해야하는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5항)
- Q) 외부 강사(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20만원선인데 원천징수할 금액은?
- A) 기타소득 강사비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외부강의 사례비를 받은 경우 신고방식은?
- A) 연간 강의사례비금액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인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분리과세로 과세절차 종료하거나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있다. 연간 수입금액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 Q)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 안하면 조세포탈범이 되는가?
- A)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조세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포탈세액이 최소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 Q) 교단연금 가입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가?
- A) 교단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이 법으로 규정한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교단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Q) 연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가?

A)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Q)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

A)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가족이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대상자가 되므로 기타소득자는 지역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11월에 기준소득을 변경한다.

■ 프로그램 소개

---

---

##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

---

---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별첨 참조

## ■ 메 모

---

---



## ■ 단체 소개

---

---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홈페이지 [www.cfan.or.kr](http://www.cfan.or.kr)

팩스 02-741-2794

전자우편 [cfan05@hanmail.net](mailto:cfan05@hanmail.net)

##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 1. 연구와 개발**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2. 배포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 3. 교회현장 운동**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 4. 교육과 컨설팅**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 함께하는 단체들

---

### 교회개혁실천연대

-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 전화\_02-741-2793      ·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 팩스\_02-741-2794      · 우편주소\_protest@protest2002.org
- 

### 기독경영연구원

-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 전화\_02-718-3256      · 홈페이지\_www.kocam.org
  - 팩스\_02-718-3528      · 우편주소\_kocam@kocam.org
-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전화\_02-794-6200      · 홈페이지\_www.cemk.org
  - 팩스\_02-790-8585      · 우편주소\_cemk@hanmail.net
- 

### 바른교회아카데미

- 주소\_서울시 종로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 전화\_02-777-1333      ·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 팩스\_02-319-1103      · 우편주소\_gcacademy@hanmail.net
- 

### 재단법인 한빛누리

- 주소\_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83-2번지 2층
- 전화\_02-924-0240      ·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 팩스\_02-924-0243      · 우편주소\_thebrightfd@gmail.com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